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85

발의연월일: 2021. 5. 18.

발 의 자:서삼석・이상헌・김민철

서영교 · 홍정민 · 윤재갑

김종민 · 강선우 · 김영배

김영진 · 서동용 · 김영주

김원이 · 임호선 · 이수진

최종유 • 이용선 • 김철민

신동근 · 강병원 · 이개호

도종환 · 김승원 · 김정호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수산자원의 보호·회복의 목적으로 바다숲, 바다목장, 산란·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 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고 있음.

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, 구조물(인공어초, 자연석 등) 을 시설하는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 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,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하며, 「해양환경관리 법」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함.

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

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협의·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,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·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·평가하도록 하는 사전·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며, 사전·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1조).

법률 제 호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·평가하여야 하며,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,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"를 "시행하기 전·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·평가(이하 "사전·사후영향조사"라 한다)하여야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정관청(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협회 등도 포함한다)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·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-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

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, 사전·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 ① (생	제41조(수산자원조성사업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행정관청(제61조에 따라 수
	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
	행하는 기관・단체・협회 등도
	포함한다)이 제1항제1호부터
	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
	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
	경우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
	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
	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
	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
	의・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	<u>③</u>
업을 <u>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</u>	<u>시행하기 전·후에 해당</u>
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・평가	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
하여야 하며, 수산자원조성사업	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
의 추진방안, 시설관리 등에 필	조사・평가(이하 "사전・사후영
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	향조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<u>정한다</u> .	
<u><신 설></u>	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
	<u>사전·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</u>
	우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·도지 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·평가한 결 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 자원관리수면 관리·이용 현황 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 ④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
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
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
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<u> </u>
<u>제3</u>
<u>- 8</u>
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
안, 사전·사후영향조사의 방법
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